



제 428국회 (임시회)  
제 2차 정무위원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보험모집 제한〉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75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4. 9.

다. 회 부 일 : 2025. 4. 10.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자기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최근 자기계약 금지 규제를 회피하고자 일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함에 따라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등의 불공정한 보험모집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개인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또는 법인보험대리점·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현직 임직원 등인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보험 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01조의3 신설 등).

###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비상임이사 포함)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항, 안 제101조의3 신설).

| 현 행                                                                                                                              | 개정안                                                                                                                |
|----------------------------------------------------------------------------------------------------------------------------------|--------------------------------------------------------------------------------------------------------------------|
|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①<br>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br>1. ~ 5. (생략)<br><u>&lt;신설&gt;</u><br>②·③ (생략) |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①<br>-----<br>-----<br>-----.<br>1. ~ 5. (현행과 같음)<br><u>6. 제101조의3을 위반한 경우</u><br>②·③ (현행과 같음) |
|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①<br>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br>1. ~ 4. (생략)<br><u>&lt;신설&gt;</u><br>②·③ (생략) |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①<br>-----<br>-----<br>-----.<br>1. ~ 4. (현행과 같음)<br><u>5. 제101조의3을 위반한 경우</u><br>②·③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u>제101조의3(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보험모집의 제</u>                                                                           |

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판단 기준은 제101조제2항을 준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보험대리점 또는 법인보험중개사

가. 법인보험대리점 또는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해당 법인보험대리점 또는 법인보험중개사 발행 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보험을 모집하는 것이 공정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보험업법」 제101조<sup>1)</sup>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된 목적’의 의미는 「보험업법」 제101조제2항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자기계약으로 모집한 보험료의 누계액이 해당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전체 보험료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자기계약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아울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sup>2)</sup>하고 있음.

○ 이러한 ‘자기계약의 금지’ 규정의 취지는, 간접적으로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보험회사를 보호하고, 직접적으로는 이러한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를 통한 보험계약자의 이익취득 등 사회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음<sup>3)</sup>.

---

1) 「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①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累計額)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2) 「보험업법」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3) 이성남, 「보험업법」, 2022, 459p

□ 한편, 일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sup>4)</sup>이나 전·현직 임직원 등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해당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는 등 이러한 자기계약 금지 조항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sup>5)</sup>.

○ ‘공시대상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sup>6)</sup>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함.

- 2025년에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 92개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수는 3,301개임.

○ 현행 「보험업법」 상 ‘자기계약 금지’ 규정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으로, 회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전·현직 임직원 등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여 해당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회사 또는 회사 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자는 제외한다)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자

5) JTBC 2017. 10. 21.자 기사 “친인척에 2000억 보험 몰아주기...‘묵묵부답’ CJ”

시사저널 2019. 4. 30.자 기사 “법LG가 3세 소유 LK보험중개에 수백억대 ‘통행세’ 몰아주기 논란” 등 참조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  
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전·현직 임직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현행 ‘자기계약 금지’와 동일하게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험모집에서의  
공정경쟁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로 이해됨.

○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1] 개정안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 모집 제한 대상<br>보험대리점 및<br>보험중개사 | 개인                                                                    |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br>·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현직 또는 전직(3년<br>이내)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           |
|                              | 법인                                                                    | · 임원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br>·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계열회사가 해당<br>법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지분의 30% 이상 소유 |
|                              | 기타                                                                    | · 그 밖에 공정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저해한다고 인<br>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모집 제한 범위                     | ·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br>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 |                                                                                               |
| 주된 목적 의미                     | · 현행 ‘자기계약 금지’와 동일                                                    |                                                                                               |

□ 개정안과 같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전·현직 임직원 등과 관련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모집을 제한할 경우, 공정한 보험모집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경우 이에 속하는 회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제47조<sup>7)</sup>) 등이 적용되나, 개정안에서 제한하려는 유형의 보험모집에는 직접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공정거래법」 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규정은 ① 동일인<sup>8)</sup>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②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되며, ③ 해당 회사와 계열회사 간의 거래 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음.
- 개정안에서 제한하려는 행위는 동일인이 자연인 또는 법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고, 회사의 특수관계인뿐만 아니라 전현직 임원 등을 포함하며, 계열회사가 아니더라도 이들이 설립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① 공시대상기업집단(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으로 한정한다)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3. 특수관계인과 현금이나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 ②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는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또는 사업기회 제공의 상대방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래를 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8)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자연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상 행위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내용을 「보험업법」에 규율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합한지 여부, 보험모집 제한 필요성 및 비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법체계 측면에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일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공정거래법」이 아닌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됨.

○ 개정안은 해당 보험모집 제한 규제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규제의 준수 여부 및 위반 시 제재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검사·감독을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보험업법」에 직접 규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일반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규제와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하여 개정안과 같이 「보험업법」에 이를 규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개정안은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해당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전·현직 임직원이 속해있다는 사유 만으로 보험모집을 제한하는 것의 필요성 및 비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금융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등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까지 거래를 제한할 필요성과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개정안은 보험모집 제한의 대상으로 “그 밖에 공정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sup>9)</sup>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보험모집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 특정 대상에 대한 보험모집이 직접 제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위임하거나 이를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9) 안 제101조의3제3호 참조

|              |
|--------------|
| 문 의 처        |
| 02)6788-5106 |